

2024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전통예능분과 제1차 회의록

■ 회의일시 : 2024. 2. 22.(목), 14:00

■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■ 출석위원 : 성기숙, 성애순, 원명(김종민), 정성숙,
전경옥, 조남규, 최현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	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↓	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	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↓	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↓	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	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 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 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 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↓	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↓	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검토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	비공개
2	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	공개
3	국가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조사 대상종목(전통예능분야) 조사자 검토 및 추천	비공개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2.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가 접수 (“24년 1월)됨에 따라,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
 - 지정일 : 1967.12.21.
 - 주요 전승자 현황
 - 전승교육사 : 손심심(‘64년생, 여, ‘2001.11.30. 인정)
 - 문종수(‘66년생, 남, ‘2001.11.30. 인정)
 - 이춘실(‘51년생, 남, ‘2001.11.30. 인정)
 - 김익현(‘61년생, 남, ‘2022.7.6. 인정)
 - 오미숙(‘65년생, 남, ‘2022.7.6. 인정)

2) 명예보유자 신청 내용

- 대 상 자 : 이춘실(전승교육사, ‘51년생, 남, ‘2001.11.30. 인정, 탈제작)
- 신청사유 : 본인이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

라. 검토의견

-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,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검토할 사항 :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
바. 의결사항

○ 부결함

- 동래야류 전승교육사 이춘실의 건강상태 및 전승의지 등을 감안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유지하도록 함

○ 의결정족사항: 출석 7명, 부결 7명

사. 특이사항

○ 없음

3. 국가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조사 대상종목(전통예능분야) 조사자 검토 및 추천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